I·SEOUL·U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20. 1. 17.

서 울 특 별 시

목 차

Ⅰ.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

Ⅱ.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광역협치형) 43

Ⅲ.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구단위계획형) 59

Ⅳ.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동단위계획형) 73

Ⅴ.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민주주의서울 연계형) 95

202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소 목 차

Ⅰ. 시민참여예산 개요 3

Ⅱ. 2019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5

Ⅲ. 2020 추진전략 8

Ⅳ. 2020 시민참여예산 주요 추진내용 10

Ⅴ.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3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13

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 25

3 예산학교 운영 27

4 사회적 포용대상(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30

5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 31

6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 32

7 시민참여예산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 33

8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 34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35

〔붙임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38

〔붙임 2〕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39

〔붙임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41

〔붙임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42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시민숙의예산 제안(공모)형 -

시민이 직접 사업을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시민참여예산 개요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201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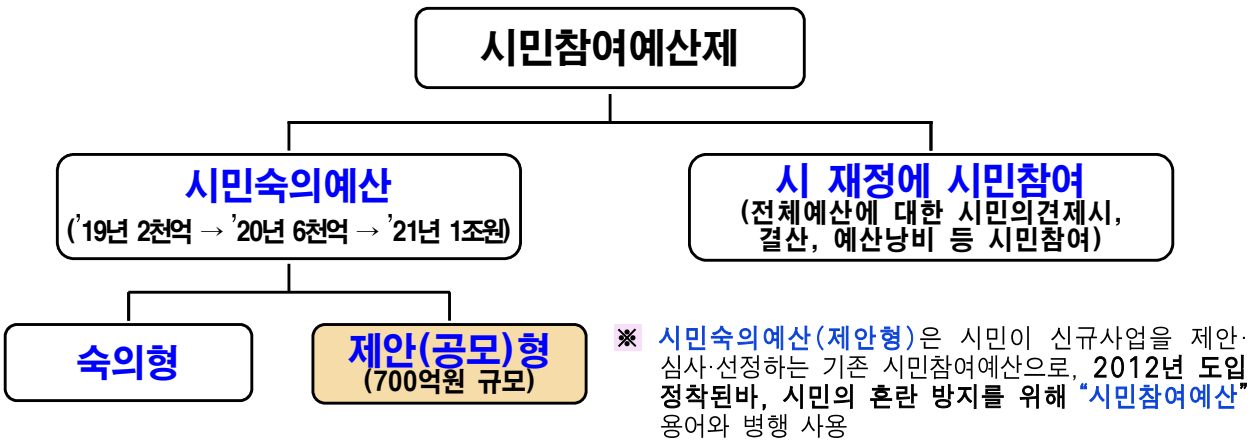

※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은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으로, 2012년 도입 정착된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용어와 병행 사용

□ 주요 운영연혁

○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 규정('12.3.9.시행)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12.5.22.시행)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 통합 확대 및 시민참여예산제로 조례명 변경('17년)

- 참여예산 사업규모 확대(500억원 ⇒ 700억원)

☐ 운영 개요

○ 총 규모 : 700억원 내외

구분	사 업 유 형		예산규모
광역 단위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 ※ 제안 유형간 사업 예산범위 조정 가능		4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 (구 시정협치형)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100억원 이내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신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광역협치형 예산 범위 내
지역 단위	○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255억원 이내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	60억원 이내

〈 사업유형별 시민참여 범위 등 〉

① 광역제안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은 사업 제안·심사·선정, 광역협치형·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은 사업 제안·심사·선정과 집행·평가까지 시민참여

② 광역협치형·구단위계획형은 서울협치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형은 민주주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 '20년 사업선정 방식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후 투표로 선정

※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에서 구단위계획형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포함 심사·상정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 총 852건 675.6억원〉

구 분	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사업수(건)	852	44	23	30	213	542
금액(억원)	675.6	350.2	74.8	25.5	190	35.1

II 2019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1 추진 실적

①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852건 675.6억원

○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 **67건 425억원**

- 제안사업 공모(2~3월)

▸ 보도자료 배포('19.2.11),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25개 자치구 4,740부), 시정 홍보매체 등(시민 게시판, 옥외 전광판 등) 영상매출 표출 및 시정 소식지(서울사랑, 구 소식지) 게재 등

- 제안사업 시·구 사무구분, 통폐합 및 적격성 검토(3~5월)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사업심사 등) 추진(3~7월) : 사업심사(5~7월)

※ 제안자 청취, 현장 확인, 숙의심사, 1차 사업 및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등 **116회 1,747명 참여**

- 최종 사업선정 시민투표(8.5~8.31) 및 한마당 총회(8.31)

※ 참여예산 제도·시민투표 대상사업 전시, 25개 자치구 현장투표소·시청역사 현장 홍보 및 투표소 운영, 시민투표(엠보팅) 156,390명 참여(참여예산위원 204명, 예산학교 회원 503명, 제안자 708명, 일반시민 154,975명)

○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785건 250.6억원**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 지역참여형(6개 구 30건), 구 단위(19개 구 213건), 동 단위(145개 동 542건) 사업 선정

② 시 전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

○ **참여위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5개 분과 74명)

○ **참여내용 : 2020 서울시 전체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 23개 실·본부·국, 410개 주요사업, 9조 8,220억원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2020 예산 편성방향 제시**(3~6월) → **주요사업 의견수렴**(7월)
→ **시민의견서 작성·확정**(8~10월) →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11.1)

③ 예산학교 운영 : 2,400여명 교육 참여(예산학교 회원 773명 양성)

○ **교육대상 : 일반시민**(청년·장애인, 청소년 등) **및 참여예산 위원 등**

○ **운영결과 : 총 77회, 2,425명 교육 참여**

- 기본교육 32회, 찾아가는 교육 22회, 심화교육 9회, 청소년 교육 14회

※ '19년 기본교육 수료자(예산학교 회원) : 773명('12~'19년 예산학교 회원 수 순계 3,596명)

2 주요 운영성과

①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범위 확대

○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참여 수 증가

※ 엠보팅 시민 156,390명 참여('18년 대비 35,589명(29%) 증가)

○ **시민숙의예산 도입·시범 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신규사업 ⇒ 기존사업까지 확대)**

- 신규사업 제안·심사 참여에서 기존사업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과정 구축
- 예산의 시민참여 규모 확대(700억원 ⇒ 1조원, 단계적 확대 추진)

※ 6개 분야(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관련 민·관공동 숙의·공론화

② 컨설팅단 운영 내실화 및 참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향상 제고

○ **컨설팅 대상사업 현장확인 등 운영 내실화 통해 시민제안서 숙성 및 품질 향상**

- 컨설팅 시 현장확인을 확대('18년 10건→'19년 33건)하여 시민제안서 품질 향상

※ '18년 90건, '19년 135건 컨설팅 완료

- 컨설팅 사례 공유, 컨설턴트에게 전문분야 및 지역별로 사업을 선택·배분하여 양질의 컨설팅 제공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 과정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실시**

- 시민이 제안·선정한 사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계획 취지 및 이행',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장확인 평가
- '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213개 사업, 41,973백만원), '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130개 사업, 42,791백만원)에 대해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③ 예산학교 연중 운영 안정화 및 맞춤형 교육 확대

○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연중 운영체계 안정화 및 시민 편의성 제고**

- 연간 일정 미리 확정 및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시기를 자유롭게 골라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및 청소년 예산학교 최초 운영 및 청년 예산학교 확대 운영('18년 4회 ⇨ '19년 12회) 등 맞춤형 교육 강화**

- 장애인 예산학교 운영 시 수어 및 문자 통역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④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확대(11개 ⇨ 19개)**

- 참여예산사업(4.5~5.5억원)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구단위계획형) 추진 시 추가지원(5억원)
- '17년 도입 후 매년 추진 區 증가('20년 全 자치구로 확대·시행 예정)

○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범위 확대로 사업관리 강화**

- 평가지표 간소화(25개→17개), 자기진단평가 도입으로 평가 이해도 및 수용성 증진
- 사업추진실태 평가범위 확대(1년→2년)로 반납, 이월사업 관리 강화

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사례조사 및 시민의견 조사로 제도 개선 향상 도모

○ **시민참여예산사업 사례 · 조사 분석(시민의견 조사/인터뷰, 5월~11월)**

- '12~'19년 참여예산제 및 제안 · 선정 참여예산사업 대상으로 사업제안, 집행, 성과, 제도개선 등 관련 조사(서면, 전화, 면담 조사)

※ 참여예산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보존, 성과 평가 및 환류 등 필요성 제기

○ **시민참여예산 관련 온라인 시민의견 조사(9.9~9.24(16일간), 756명 참여)**

- 사업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 참여예산 위원 및 일반시민 등 대상 참여
- 엠보팅 시스템을 활용 참여예산 인지도, 경험, 인식, 사업접수 · 심사진행에 따른 투명성 및 공정성 수준, 만족도 및 개선의견 등 조사(조사결과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

※ 조사 결과 대시민 홍보 강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필요성 등 제기

Ⅲ 2020 추진전략

시민참여예산사업 유형 신설 및 명칭의 합리적 조정

○ 사업 유형에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예산 반영(신설)

○ 사업유형명을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광역자치단체 사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시정참여형 → 광역제안형 / 시정협치형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시·자치구 사무내용을 시민들과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공지해 사업 제안 및 심사 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진행현황 공지 서비스(My page 및 SMS 알림서비스) 제공

○ 참여예산 홍보 강화로 시민 인지도,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민관예산협의회 등 사업심사의 효율성 제고

○ 제안사업 공모절차 조기 진행, 사업심사 기간 확대(29주 → 32주)로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 강화

○ 심사 전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역할 설명 및 심사자료를 사전 배부함으로써 1차 적격 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 실시

○ 참여예산 주무부서 직원의 정책기획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진행 및 사후관리 중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외부용역 시행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적 시민참여 체계 모색

○ 시민 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민생경제·민주서울 분야)의 통합운영 시범실시 ('숙의예산심의회'에서 사업심사·조정)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

○ 기 선정·시행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市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우수사업 관리

○ 모니터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 확대(5천만원 이상 사업 → 전체 사업) 및 상시 집행현황 점검체계 운영

자치구 참여예산제 발전 견인 및 활성화 도모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전면 실시(19개 → 전 자치구)

○ 개선노력 평가지표 신설로 참여예산제 비활성화 자치구의 활성화 유도

市 참여예산 운영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장치 마련

○ 시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및 사업의 성공적 실행에 기여한 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서울창의상' 시상) 부여 추진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더욱 쉽고 편리한 교육 운영

○ 예산학교를 3가지 유형별 맞춤형 운영하여 실무교육 집중

-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신설), 심화예산과정 운영

○ 대상별(청소년 등) 맞춤 교육 및 권역별 학교(자치구 신청제) 운영

○ 예산학교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Ⅳ 2020 시민참여예산 주요 추진내용

1 시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명칭의 합리적 조정

① 시민참여예산사업 대구분 및 세부유형 조정, 시정분야 사업유형 명칭 변경

○ 시민참여예산사업 대구분 체계 변경 및 세부영역 신설

- 기존의 '시정분야', '지역분야'의 대구분을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조정
  - ▸ 광역단위(3) :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 ▸ 지역단위(2) :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기존 시정형 사업(시정참여형 · 시정협치형)의 명칭 변경

- 시정참여형 → 광역제안형 / 시정협치형 → 광역협치형
  - ▸ 사업유형명의 용이한 이해 및 시 사무내용(광역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반영 목적

2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①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및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시 · 자치구 사무내용 정보를 시민들과 시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제공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들의 사업성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 제공(회의시 자료 비치)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

○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관련 정보 제공

- 제안자에게 선정사업 진행현황 공지 서비스 제공
  - ▸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사업 진행현황을 안내하는 'My page' 및 'SMS' 신설 (단계별 알림서비스 연계 개발)
-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편의성 강화)
  - ▸ 사업 제안 ⇒ 사업 심사 ⇒ 사업 선정 ⇒ 사업 시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 제고 및 검색의 용이성 개선

② 다양한 매체 활용 시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강화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행사 활용 홍보로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시 보유 매체**(각종 영상매체, 내 손안에 서울, 서울 시민기자, 라이브 서울, 소통방통 등) 및 **기타 매체(파워블로거, 인스타그래머, 유튜브 등)** 활용 홍보
- 시민참여예산 백서 발간·배부하여 시민관심 제고
- '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현장 홍보, '20년 한마당 총회 개최(엠보팅 대상 사업 전시·홍보 포함) 홍보
- '20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연계 시민참여예산 홍보

○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단계별 연계로 시민참여예산 홍보**

- 민주주의 서울 초기화면 상단 '시민제안'의 부메뉴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연결
- 시민참여예산 참여방법 안내 후 링크 이동 제공
- 시민참여예산 통계정보, 글목록 게시, 제안하기 연결 등 기능 제공

3 민관예산협의회 등 사업 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제안사업 공모, 심사 등 참여예산사업 운영기간 확대(29주 ⇨ 32주)

○ **시민(단체) 제안사업 공모절차 조기 진행**

- 당초 2~3월에 진행하던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1~2월로 조정 조기 착수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기간 확대(10주 → 12주)**

- 적격심사 전 '사전 검토회의' 운영, 본심사 전에 위원들이 제안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부여
-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간 확대

② 참여예산 주무부서의 정책기획 업무 집중 환경 조성

○ **직접 수행하던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개최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에 대행토록 해 담당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 회의 준비, 진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단순 경미한 업무의 용역 시행

※ 업무 성격상 행정 내부적 관리,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활용이 수반되는 사항 및 사업 선정 등 중요사항은 기존대로 직접 수행

4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

① 우수 시민참여예산사업 사례 관리

○ 기 선정·시행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시 일반사업화 된 사례 등 Archiving

- 연 1회 사례조사 실시(일반사업화 사유·경위, 변경내역 등 분석)
- 조사결과 백서 수록 및 홈페이지 게재

②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상황 점검 효과 제고

○ 온예산분과 위원의 모니터링 대상사업 범위 확대(5천만원 이상 사업 → 전체 사업)

- 사업계획 수립 확인, 사업 진행현장 확인, 사업성과 점검 등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시민참여예산사업 연중 집행관리 강화

- 이호조 시스템을 연계, 상시 집행현황 점검체계 운영(집행률 점검, 부진사유 및 대책 확인)

5 참여예산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동기부여 장치 마련

① 참여예산사업의 추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서울창의상' 시상 추진으로 참여예산사업 실행 공무원에 동기 부여

- '제안실행 부문' 심사 대상에 우수 실행한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 분야) 추가
  - ▸ '20년부터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사업 실행 우수 공무원으로 시정에 기여한 市 공무원을 선정, 시장표창 및 상금 수여 ※ 사회혁신담당관 협조 필요

6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의 다양화 및 내실화

①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교육장소 등 시민 편의성 제고

○ 숙의예산학교 신설 등 프로그램 다양화

- 숙의예산 운영 확대에 따른 과정 신설 및 대상별(청소년 등) 맞춤 교육 확대

○ 권역별 학교 운영 및 교재 개발 등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

-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권역별 예산학교 운영(자치구 신청제)
- 예산학교 기본교재 개발 및 교육용 웹툰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

Ⅴ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1 총괄 개요

☐ 예산 규모 : 700억원 내외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에 따라 구단위계획형 사업금액 차등 지원

☐ 사업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광역 단위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광역협치형 (구 시정협치형)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신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 광역협치형 예산범위 내 활용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지역 단위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선정심의회

※ 광역단위〔광역협치형(서울협치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형(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지역단위〔(구단위계획형(서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지역공동체담당관)〕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2 시민참여예산(광역제안형) 사업 심사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00억원 내외

-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주요분야(9개)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 심사 (구단위계획형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토록 조치)

○ 추진방법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사업심사
  ※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심사(기타 절차는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절차와 동일)
- 민관예산협의회는 분야별 한도액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
- 참여예산 총회는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및 제안자 투표, 시민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

☐ 추진절차

□ 세부 추진계획

① 참여예산사업 신청 '20. 1. 17. ~ 2. 28. (6주)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사업설명 동영상, 기타 필요한 자료 등**(붙임 2)

▣ **신청기간** : **2020. 1. 17.~ 2. 28.**(43일간)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 · 방문접수**

※ 우편 접수처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3층)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20. 3. 2. ~ 4. 18. (7주)

▣ **사업분류** : **시사무**(광역제안형 · 협치형), **자치구사무**(구단위계획형)

○ **광역제안형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간사 부서에 설치하는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에 회부(단,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은 **「숙의예산시민회」** 심사에 회부)

※ 시정분야 : 조례 제18조의2 제1호 및 제2호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 **광역협치형 사업**은 **서울협치담당관**에서 협치형 사업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광역제안형으로 신청된 사업중 자치구 소관 사업은 실·본부·국에서 분류 후 해당 **자치구로 이관**(구단위계획형 또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토록 조치)

▣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시 사업부서**에서 **유사사업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후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검토 회부

【 부적격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조의 2 등」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市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 예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등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시(구)립 시설로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 예 : 공공청사(시·구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1년 이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단, 다음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적격)
  ※ 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출자·출연금 시의회 사전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③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심사 '20. 4. 20. ~ 7. 10. (12주)

▣ 사전 검토회의 운영

○ 시민(단체) 제안사업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깊이 있는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부여

▣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심사

○ **시 사업부서**에서 적격 및 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 **적격(조건부 적격 포함) 분류된 사업**에 한하여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제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참고자료나 UCC(User's Created Contents)를 제출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현장확인** 실시
- 위원별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사진 포함) 후 현장확인보고회 개최
-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사업 1차 선정 시, 첨부 심사

▣ 제안사업 1차 선정 : 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200% 사업 선정

○ 사업제안서, 시민의견, 사업부서 실무보고서, 현장확인 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 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사회적 포용성 등**을 **위원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붙임 3)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200%인 **600억원**으로, 분야별 적격 사업수 및 사업비 비율로 배분

○ 분야별 적격사업이 200% 미만일 경우 평가 생략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여 숙의 실시**

○ **제안자를 참여**시켜 제안 취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토론

○ 토론을 통한 사업 보완·발전(구체화, 유사사업 통폐합 등) 후 위원별로 사업 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사회적 포용성 등에 관한 평가표에 따라 **2차 평가** 실시(붙임 3)

※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거 평가 제외 사업 선정 가능

▣ 사업 우선순위 결정(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130%)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분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 결정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130%인 **390억원**
- 시 사업 중에서 통폐합 구체화 후에도, 수혜범위가 1개 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시민투표 대상사업에서 배제
  ▸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예 : 한강, 서울숲 등 관련사업)이나 시범사업은 가능

※ 지방자치법 시사무 규정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

○ 시민투표대상사업 수를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후 결정**

④ 시민투표대상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 '20. 7. 13. ~ 7. 24. (2주)

▣ 부적정 사업에 대한 이의 제기(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활용)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선정한 시민투표대상사업에 대해 일반시민의 이견 접수

○ 이의·조정 제기 사업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검토 후 지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⑤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총회) '20. 8. 29.(토)

▣ 선정방법 : 전자투표(엠보팅)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및 일반시민 전자투표를 실시

(자치구별 현장 전자투표 병행 ※ 용역 시행)

※ 최종사업 선정방식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결정

▣ 투표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위원회 출석률 50% 이하('20.7.31.기준)일 경우 일반시민 투표반영 비율과 동일

▣ 투표기간 및 반영비율 등

○ 투표기간 : 2020. 8. 3.~ 8. 29

○ 투표 반영비율 등

구 분	참여예산위원(총회)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투표
반영비율	20%	5%	5%	70%
투표방법	총회 현장PC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자치구별 현장 PC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반영비율, 투표방법 등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반영

▣ 총회 개최 : 2020. 8. 29(토), 다목적홀/시민청 등(추후 변경 가능)

○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위원 및 시민 참여프로그램 운영(별도 계획 수립)

⑥ 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20. 9. 1. ~ 10. 31. (9주)

▣ 편성방법

○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서울민주주의 연계형 :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구단위·동단위계획형 :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안에 편성

⇒ 사업설명서 사업명 표기 : 일반사업과 동일(추진 근거 및 경위 등에는 시민참여예산과의 관련성 기재)

※ 사업부서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선정된 참여예산사업 사전 설명

⑦ 예산안 시의회 제출 '20. 11. (※시의회 심의 의결 후 최종 편성 사업 확정)

3 컨설팅단 운영

☐ 운영개요

○ **대상사업 : 광역제안형 사업**

○ **구　　성 : 각 분야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50명 내외)

- 각 분야 전문단체 및 퇴직공무원, 전임위원, 마을 활동가 등으로 구성

○ **역　　할**

-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 대한 상담·지원 :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 평가·환류 : 컨설팅 완료 후 평가보고회 개최(컨설턴트 등 참석)

☐ 운영절차

○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 각 분야 추천자 등으로 구성 후 심화교육 실시**(市)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 컨설턴트별 담당사업 배정 및 사업제안자 통보**(市)

※ 컨설팅 희망 제안사업 중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배정, 안내

○ **컨설팅 실시 : 제안자 면담 등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컨설턴트)

※ 제안자와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제안취지 확인 및 세부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보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市 제출**(컨설턴트)

○ **수정제안서 제출 :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市 제출**(사업제안자)

○ **평가보고회 개최 : 컨설팅단 활동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논의 등**(컨설턴트 등)

☐ 추진일정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실시	수정제안서 제출	결과보고 제출	평가보고회
市 (시민숙의예산담당관)	市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컨설턴트	시민(제안자)	컨설턴트	컨설턴트
2월	3월초	3월	3월말	4월	9월

4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약칭 '위원회')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 『예산학교 회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위원회 위원은 300인 이내로 운영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 「예산학교 회원」 취득

○ **예산학교 신청자격**

- 모집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임기 만료된 참여예산위원도 신청 가능함

※ 시·구 공무원 및 시·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예산학교 수강신청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 예산학교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받아 운영

○ **「예산학교 회원」 자격 취득**

- 참여예산 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
- 예산학교 이수자는 「예산학교 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시 5% 투표권 행사
- 조례 개정('17.3.23)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예산학교 회원**(약 3,400여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2주간)**를 통해 위원회 참여의사 및 기능분과 희망자 사전 파악**

○ **기능분과(온예산 · 홍보분과) 선 추첨 후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추첨**

- 추첨인원 : 275명(300명 중 시장 · 시의원 추천 25명 제외)
- **연령, 성별, 지역(자치구) 간 균형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 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

※ 전년도 신임위원의 자동 연임제(출석률 기준) 폐지, 전원 무작위 추첨 선정

○ **선정된 위원은 市 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시민참여예산위원 시장 표창

○ **표창기준 : 2019년 활동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90% 이상인 위원**

○ **제 외 자 :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자, 시민참여예산 관련 표창기 수상자**

○ **수 여 일 : 2020년 4월**(예정)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부상 없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20. 2월)

○ **위원회 위원수 : 30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분과장(민관협 회장(10) 및 기능분과장(6))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총회 회의시마다 선출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기간 : 위촉일 ~ 2021.2.28 ※ 위촉식 4월 예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의결 기능

○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록 또는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주요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 민관예산협의회 : 주요 시정분야에 10개 내외 설치

○ 설치분야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 분야별 협의회 구성 : 약 27명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참여예산위원 약 20명, 민간전문가 약 3명(실·본부·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 4명 등
- 협의회장은 참여예산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간사 2명 : 참여예산위원 1명 및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 협의회 기능 : 시민 제안사업 심의·조정 등

- 사업선정 등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기능분과

○ 설치분과 : 온예산분과 5개 내외, 홍보분과 1개

○ 분 과 장 : 6명 내외

○ 구성인원 : 총 100명 내외(온예산분과 75명 내외, 홍보분과 25명 내외)

【위원회 분과 위원회】

분과명	구 성	기능 · 운영
민관예산협의회 (10개 분야)	- 총 270명 내외(민간전문가 및 사업부서 팀장 포함) · 10개 분야별 구성 : 여성 · 교육, 경제 · 일자리, 복지 · 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 분야별 27명 내외	○ 기 능 :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 광역제안형 · 광역협치형 사업 · 실·본부·국에 두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에 회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 심사에 회부 · 심사 진행 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운 영 - 사업심사·선정 : '20.4~7월 -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 '20.7월
온예산분과 (5개 분과)	- 총 75명 내외 · 5개 분야별 분과 구성 : 복지 · 여성, 문화 · 관광체육, 환경 · 공원, 도시안전 · 교통 주택, 경제일자리 · 행정 · 분과별 15명 내외	○ 기 능 :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등 - 온예산 참여 : 시 전체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대상 집중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정량평가 실시 ○ 운 영 - 시 전체예산 의견서 작성 및 결산과정 참여 : '20.3~10월 - 사업 모니터링 : '20.3~10월 - 예산낭비 감시 : '20.3~'21.2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20.5월
홍보분과 (1개 분과)	- 총 25명 내외 ·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전문독립분과로 구성	○ 기 능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 참여예산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운 영 - 전체회의(분기별) : '20년 연내 - 시민참여예산제 취재 : 연간 상시 취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한마당총회 등)

②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약칭 '협의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참여예산제도 발전 · 운영 지원

□ 구 성

○ 인원 구성 : 30명 내외

-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예산위원, 협치 위원, 시의원, 공무원 등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으로 함

○ 임원 : 회장 1, 부회장 1(임기 1년)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참여예산위원은 조례상 위원 임기규정에 따름(임기 1년)

□ 기 능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등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

○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예산학교 운영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지원

○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운 영

○ 회의개최 :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수시 개최

○ 참여예산위원회 전체 분과장 참여로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 소통 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 · 능률성 향상 도모

- 참석 실비: 20,000원(참여예산위원의 참석 실비와 동일하게 지급)

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區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 개선노력 평가지표 신설로 참여예산제 비활성화 자치구의 활성화 유도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

○ **사업규모 : 300억원 내외**(구단위계획형 255억원이내, 동단위계획형 60억원 이내)
- '20년 사업은 6개 자치구가 지역참여형으로 30개 사업 25.5억원을 추진하며, '21년 사업부터는 全 자치구가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

○ **추진방법 : 구단위계획형(지역단위), 동단위계획형(마을단위)으로 구분, 추진**
- 자치구 사무는 區에서 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심사 절차에 따라 '21년 지역단위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고,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구 분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대상 자치구	25개 구	25개 구
제안주체	구 협치회의 등	동회의 등
지원금액	구별 평균 10억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따라 차등지원	동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市 주관부서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 5월**
○ **평가항목 : 위원회 구성,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개선노력**(신설), **시민투표 시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감점 등**
○ **평가위원 : 市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외부전문가**
○ **평가방법 : 정량·정성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평가결과 : 총점 고득점 순으로 상(7구), 중(11구), 하(7구) 평가등급 산출**
○ **결과활용 : '21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비(구단위계획형) 차등 지원**

유 형	상(7개구)	중(11개구)	하(7개구)
지원규모(억원)	10.5억원	10억원	9.5억원

※ "2020년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참고 〉 시민참여예산 추진 체계도(지역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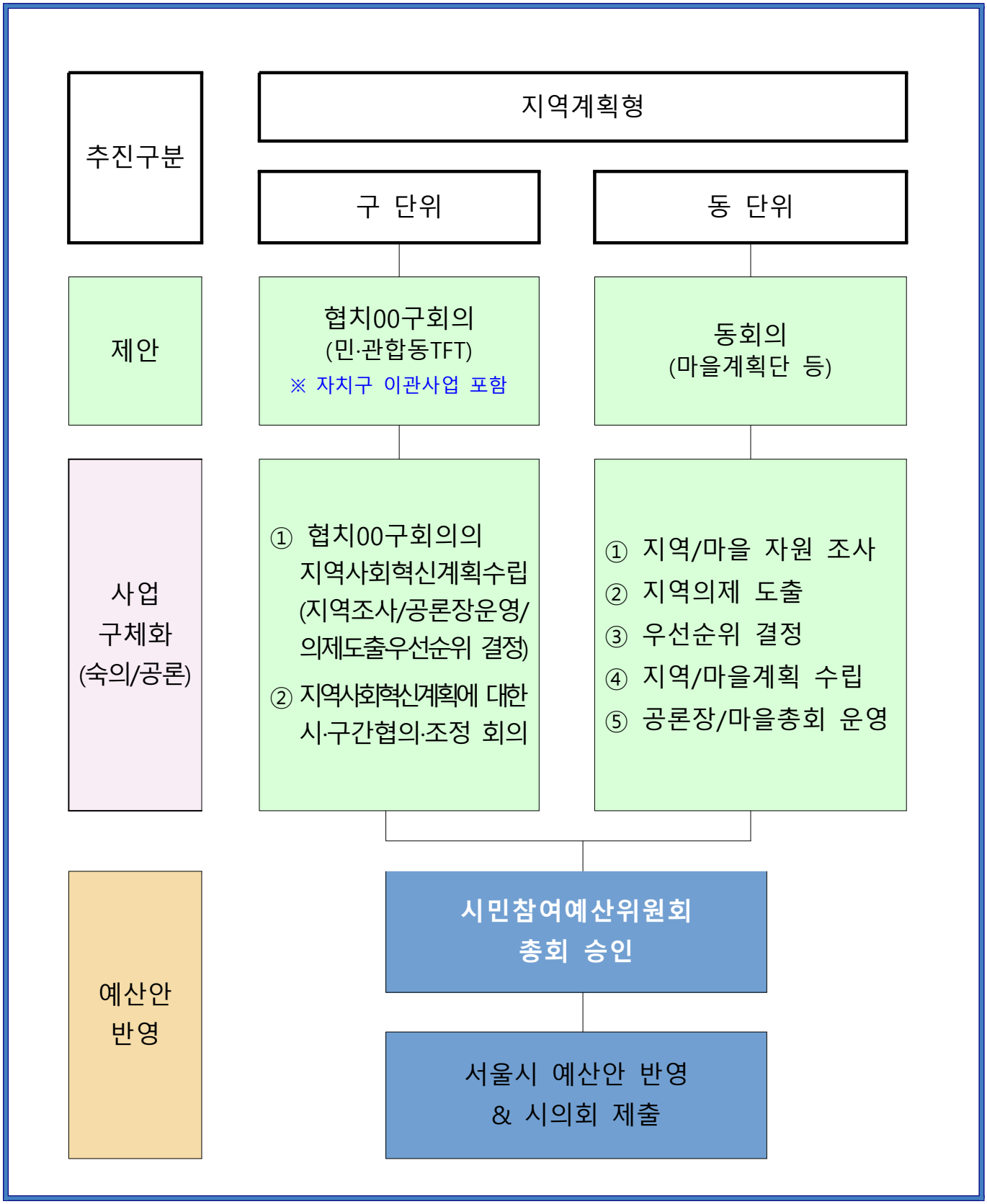

3 예산학교 운영

■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교육과정 다양화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운영개요

〈 추진방향 〉

◈ 예산학교 다양한 교육 체계 운영

- 3가지 유형별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맞춤형 실무교육에 집중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신설)	심화예산과정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횟수 : 연간 40회	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중심 횟수 : 연간 20회	대상 :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횟수 : 연간 10회

◈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자치구 신청제 도입

-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상설교육 운영

► 지역별(권역별), 주제별(예산부문별, 대상계층별) 기획 및 운영

◈ 예산학교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제작 및 일반시민 배포
- 市 인재개발원과 협의 등 공무원 일반교육에 참여예산 과목 포함

☐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운영 (시기)	목표인원 (연인원)	교육내용
시민예산과정	시 민 누구나	연 40회 (4~10월)	1,500명	- 市정책과 예산의 이해 -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례
숙의예산과정	숙의예산시민회, 공무원 등	연 20회 (2~3월)	600명	-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및 활동방향 논의 - 참여예산 우수사례 및 전임위원 경험 공유
심화예산과정	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연 10회 (3~5월)	600명	- 위원 : 공통교육과 분과실무교육 -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 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 공무원 : 참여예산제 추진 관련 심화교육
특화프로그램	청소년	3회 (2~12월)	300명	- 시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제안사업 숙성과정 운영 (토론 및 사업 컨설팅 등) ※ 동아리별 활동 등 별도 계획 수립
계		73회	3,000명	

☐ 세부 운영계획

○ **시민예산과정** ※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일) 운영

- 교육대상 : 모든 시민(주제별 교육은 해당 대상)
- 운영횟수 : 연간 40회 / 지역별(20회)+주제별(20회)
  - ► 지역별 : 5개 권역별 4회 개최(권역별 주간·야간반 각 2회)
    · 자치구 신청제 방식 운영 (市 예산지원 및 운영 / 區 홍보 및 모집)
  - ► 주제별 : 예산부문별, 대상계층별 운영(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 교육내용
  - ► 참여예산제 개요 및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 지방예산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현황
  - ► 사업제안 등 참여 시 자세 및 유의점(부적격기준 등) 등
  -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제안 및 평가 실습(워크숍)

※ 예산학교 이수자의 시정 참여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사업 선정 투표시 5%의 투표권 부여

○ **숙의예산과정** ※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일) 운영

- 교육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 운영횟수 : 연간 20회(2~3월 집중교육)
  - ► 편리한 시간대 수강으로 참여자 편의성 및 수강률 제고(주간·야간반운영)
  - ► 숙의예산시민회원 대상 기본교육

- 교육내용
  - ► 예산 개요 및 서울시 예산현황, 주요 사업 등 이해
  -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 ► 숙의예산사업 사례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공유
  - ►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심화예산과정** ※ 교육시간 : 2시간 운영

- 교육대상 : 참여예산위원, 민관예산협의회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 운영횟수 : 연간 10회 / 공통(1회)+기능분과별 등(9회)
  - ► 공통교육 : 참여예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오리엔테이션)
  - ► 기능분과별 교육 등 : 분과별(민관협, 온예산, 홍보) 교육, 리더 교육 등
- 교육내용
  - ► '20년 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세부 이해
  - ► 분과별 역할 세부 이해 및 활동방향 논의

○ **기타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개발

► 목적 : 교육 강좌별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수품질의 교재 개발, 시민의 제도 이해력 향상

► 활용방안 : 예산학교 기본교재 사용 및 시민, 타 지자체 등에 배포

- 공무원 교육 확대

► 市 인재개발원과 협의 등 통해 공무원 일반교육에 참여예산 관련 과목 포함하도록 촉진 및 운영지원(강사, 커리큘럼 등)

※ 기존 공무원 교육은 심화교육 시 담당자 실무교육 중심으로 운영

※ 2020 예산학교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운영계획 수립	'20.1월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년부터 별도 운영계획 수립
예산학교 회원 공고	'20.1월 중	- 참여예산위원 선정을 위한 회원 공고 (개인정보수정, 위원활동의사확인 및 희망분과 신청)
예산학교 교재 제작	'20.1월~3월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제작 (일반시민, 공무원 등 배포)
민간전문기관 공모 및 계약체결	'20.1월~2월	- 긴급공고(2월 중 숙의예산과정 진행 필요) - 계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숙의예산과정 운영(20회)	'20.2월~3월	- 숙의예산시민회 중심으로 기본교육과정
심화예산과정 운영(10회)	'20.3월~5월	- 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실무교육(분과별로 진행)
시민예산과정 운영(40회)	'20.4월~10월	- 연중실시, 일반시민 대상 기본교육과정
성과보고회 (연간설문종합평가)	'20.11월 말	- 연간 예산학교 운영에 관하여 평가 및 토론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0.11월~12월	- 예산학교 정산 및 마무리

4 사회적 포용대상(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누구나 시 예산과정에 평등하게 참여·수혜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대상 시민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참여예산사업 숙성 발굴 및 운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년 2월~12월**

○ **추진대상 : 청소년(300명)**

※ 청소년 프로그램 성과평가 후 여타 사회적 포용대상으로 확대 검토

○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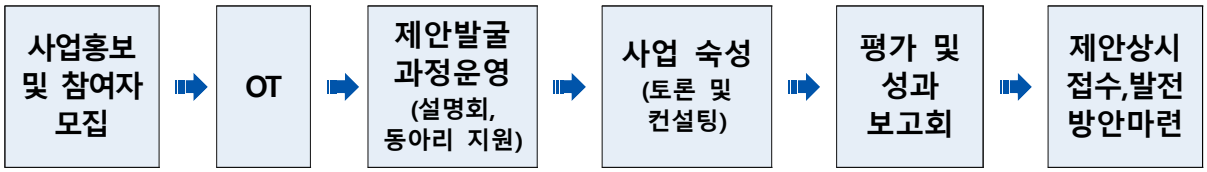

☐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2월)

- 시민 특화프로그램 홍보물 배부 및 참여 동아리 모집

○ **오리엔테이션 운영**(3월)

- 시민역량 강화(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소개 및 시민참여예산제 안내

○ **시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발굴 과정(동아리) 운영**(4월~6월)

- 시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 운영(청소년 눈높이에서 사업 논의 발굴)

○ **사업 숙성(토론 및 컨설팅)**(7월~8월)

- 사전 발굴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구체화, 통폐합, 컨설팅 등 토론장 운영

○ **평가 및 성과 보고회 개최**(9월~10월)

○ **제안 상시 접수 및 발전 방안 마련**(11월~12월)

※ 세부 실행계획 별도 수립

5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

시민의 눈높이에서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 제고

☐ 운영개요

○ 평가주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 운영기간 : 2020년 3~10월

○ 대　　상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 추진방법 : 2020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확인, 사업 진행 현장 확인, 사업성과 점검 등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로 모니터링 진행하여 집행률 독려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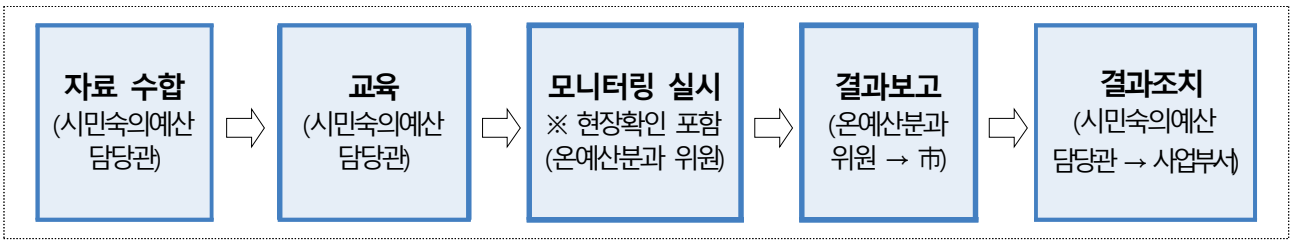

☐ 운영내용

○ 평가항목 :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률 현황, 사업 진행 시 예산낭비 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사업효과성, 시민 유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심화교육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

- 심화교육 : 사업 모니터링 과정·방법 안내 및 사업평가 실습
- 현장확인 : 현장확인 필요사업 선정 및 실시

○ 평가활용 : 시민의견 등 평가결과는 해당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

6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

- 시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운영 등 참여방법 및 절차 다양화하여 일상적 시민참여 활성화
-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 시민참여예산사업 상시 접수

○ 기 구축되어 있는 상시제안 시스템을 활용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 사업신청 〉 광역단위(수시)〕 하여 시민제안 상시 접수 및 관리

☐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강화

○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홍보영상(유튜브 등) 등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내 손안의 서울' 등 홈페이지에 참여예산 공모를 연계하여 관심 시민 참여 유도

○ 각종 시 보유 매체 및 기타 매체 활용 홍보

○ 시민참여예산 블로그(juminyesan1.blog.me)등을 통한 참여예산제 상시 홍보

- 참여예산 위원 활동내용, 사업현장 탐방, 우수사례 등 상시 홍보

○ 시민참여예산 백서 발간·배부하여 시민관심 제고

○ 사업선정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현장 홍보(4주)

☐ 한마당 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8. 29(토)/다목적홀, 시민청 등(※ 추후 변경가능)

○ 추진주체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분과"

○ 주요내용 : 서울 재정분야 축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산

※ 대행사 선정 추진

7 시민참여예산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

■ 시민참여예산 공모,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처리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수집·이용 동의 조건) 기간 만료 후 폐기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 수집·처리 계획

【 예산학교 운영 관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예산학교 회원(참여예산위원 포함) 관리
○ 대 상 자 : 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소속 자치구, 회원 및 위원 활동 사진·영상
○ 보유·이용 기간
-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인 경우 : 회원 탈퇴 시까지
※ 단,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회원 탈퇴 후 3년간 보관
-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가 아닌 경우 : 1년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
○ 대 상 자 : 참여예산 사업 제안자
○ 수집항목 : 이름(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 자치구
○ 보유·이용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8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

■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경험, 인식, 만족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종합적 조사하여,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개요

○ 기　　간 : 2020. 8. 3(월) ~ 9. 4(금) (5주간)

○ 대　　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 방　　법 : 엠보팅 시스템 및 '민주주의서울' 리서치형 투표 시스템 연계 조사

○ 조사내용

-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인식, 참여 경험 및 만족 수준
- 참여예산사업 접수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및 시민편의성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용 관련 만족도
- 시민참여예산 개선 관련 기타 의견 등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홍보 계획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민주주의서울' 팝업창을 통해 바로가기 링크 게시
- 서울시 엠보팅 메인 페이지에 설문 바로가기 배너 노출
-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대상 홍보 문자 발송
- 서울시 대량메일시스템 이용 대시민 홍보 메일 발송
- 한마당총회 홍보물에 관련 안내 게시

☐ 추진일정

○ '20. 7월 : 의견조사 항목 구성 및 프로그램 설계, 홍보

○ '20. 8월 ~ 9월 : 의견조사 실시

○ '20. 9월 :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보고, 홈페이지 공개

○ '20. 9월 ~ 12월 : 시민참여예산 개선방향 수립 시 참고 및 반영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세부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운영계획 수립	'20. 1월	- 운영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충분한 사업심사 및 홍보기간 등 부여
참여예산위원 선정	'20. 2월 ※ 임기 : 위촉일 ~ '21. 2.28.(위촉식 4월)	- 3월부터 참여예산 위원 활동 시작
제안사업 공모	'20.1.17~2.28	- '21년 참여예산사업 공모(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 시민들이 사업 제안할 수 있는 기간 부여
제안사업 시·구 사무 구분 및 적격성 검토, 통폐합 및 구체화 ※ 시·구 사무구분 및 이관	'20.3.2~4.18. ※ 3.2~3.21	- 市 실·본부·국에서 법령 위반사항 등 적격·부적격 검토(구체화 및 통폐합) 및 시·구 사무 구분 - 제안사업 컨설팅 실시(3월) ※ 구 사무 자치구 이관
적격사업 심사	'20.4.20.~5.4.	- 민관예산협의회 사전 검토회의 실시 - 사업부서 적격성 검토결과에 대한 민관예산협의회 적격성 검토·심사
제안자 설명청취(적격사업)	'20.5.6.~5.12.	- 제안자 제안취지,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명
현장확인, 현장확인결과 보고회 개최	'20.5.18.~5.26.	- 심사에 필요한 사업 모두 현장 확인
제안사업 1차 선정(200%)	'20.5.27~6.2.	- (1차 평가) 심도 있는 사업 심사
제안사업 통폐합·구체화 (숙의)	'20.6.3.~7.3.	- 제안자, 민관예산협의회위원, 사업부서 담당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을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심사 기간 부여
시민투표대상사업 결정(130%)	'20.7.6.~7.10.	- (2차 평가) 시민투표대상사업 수 감축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이의 제기 및 조정)	'20.7.13.~7.24.	- 사업 심사·숙의 시 간과한 부적격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이의기간 부여 ※ 7.27~7.28 이의건 지원협의회 심의 결정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홍보 및 시행	'20.8.3.~8.29.	- 전자투표(엠보팅)
한마당 총회	'20.8.29.	- '21년 참여예산사업 선정·승인
시민의견 조사	'20.8.3.~9.4.	- 시민 의견 수렴
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20. 10~12월	- '20년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마련 ※ 토론회 개최(11월) 등
시 전체예산 의견 수렴	▸ 심화교육 : 3월 ▸ '20년 예산 분석 및 '21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서 작성 : 3~6월 ▸ 실본부국 예산안 설명 : 8월 ▸ '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 8~10월	※ 시의회 시민의견서 제출(예산담당관) : 11월
모니터링	'20. 3~10월	
예산학교 운영	연중('20.2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20. 5월	

□ 행정사항

○ **'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개**(1월중)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개최**(1월)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관련부서 회의 개최**(2월)

- 시정사업 추진관련 10개 분야 주무팀장 및 주무부서 예산담당을 대상으로 실시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위원 추천) 및 운영 실무회의

○ **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2월말)

- 전 참여예산위원 대상 '20년 운영계획 세부이해 등
- 위원 전체대상 공통교육 및 분과별 위원 배정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등 비용 지급**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
- 자원봉사시간 인정 가능, 이 경우 자원봉사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1차 적격으로 심사된 사업 제안자가 사업설명 등 사업 심사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소요예산 : 944.2백만원

구 분		예산액 (백만원)	내 용	비고
계		944.2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299.2	· 시민참여예산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분과, 홍보분과) 운영(204.7)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8) · 시민참여예산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55) · 백서 발간(31.5)	
	공공운영비	300.0	·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130.0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총회 운영	
예산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215.0	· 예산학교운영(강사료, 대관료, 교재제작, 청소년특화프로그램 등)	

붙임 :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2.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끝.

붙 임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table>
<tr><th rowspan="2">사업
단위</th><th rowspan="2">사업
유형</th><th rowspan="2">제안주체</th><th rowspan="2">사업 채택
기준</th><th colspan="2">숙의·공론</th></tr>
<tr><th>지원내용</th><th>지원담당</th></tr>
<tr><td rowspan="2">광역
단위</td><td>광 역
제안형</td><td rowspan="2">▸ 개인
▸ 단체</td><td rowspan="2">민관예산협의회
(숙의예산시민회)
심의</td><td>▸ 컨설팅
지 원</td><td>▸ 시민숙의
예산담당관</td></tr>
<tr><td>광 역
협치형</td><td rowspan="3">▸ 예산
교육

▸ 협치
교육</td><td>▸ 서울협치
담 당 관</td></tr>
<tr><td rowspan="2">지역
단위</td><td>구단위
계획형</td><td>▸ 자치구
협치회의</td><td rowspan="2">서울시가 제시한
절차 및 협치
체계 요건 심의</td><td>▸ 서울협치
담 당 관</td></tr>
<tr><td>동단위
계획형</td><td>▸ 동회의
등</td><td>▸ 지역공동체
담 당 관</td></tr>
</table>

붙 임 2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 청 인		**소 속 자 치 구**	2개 이상 선택
연 락 처		**이 메 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 표 자 성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 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자치구
○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체크하세요(광역제안형 사업만 신청가능) ☐

“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내용 구체화, 수정·보완 등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

- 컨설턴트 :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 퇴직공무원 등
- 컨설팅 방법 : 제안자와 1:1 맞춤형 상담 진행
- 컨설팅 내용 : 제안자와의 상담을 통해 제안취지, 사업내용, 효과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제안 내용과 벗어나는 신규사업 발굴, 사업내용 교체,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은 컨설팅 대상이 아님)
- 컨설팅 완료사업의 등록 : 컨설팅 완료 후 수정 내용은 제안자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통하여 수정 제출

○ **제안사업 내용**

시 정 분 야	선택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선택 (**서울시 전체, 2개 이상 자치구(☐에 체크)**) 상세위치 (서울시 구 로)(예 :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또는 시설명 등)
소 요 사 업 비	**사업비 : 천원**
사 업 기 간	2021. . . ~ 2021. . .
사 업 목 적 (제 안 취 지)	
사 업 내 용	
사 업 효 과	
기 타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1) 시정분야 : 시정 9개 주요 분야 중에서 제안사업과 관련된 분야 1개 선택

2) 사업명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사용해 사업명을 기재(○○해 주세요 등 대화체 표현을 지양하고 ○○시설 정비, ○○을 위한 ○○○운영 등 명사형으로 표현)

3) 사업위치 : 해당 자치구명(2개 이상)에 체크 / 사업대상지의 도로명 주소, 지번 또는 시설명 중에서 기재

4) 소요사업비 : 제안사업의 실행에 소요될 추정액 기재

- 광역제안형 : 1건별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5) 사업기간 : 사업 기획, 준비, 실행 및 마무리 기간을 모두 포함해 기재

6) 사업목적 : 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 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7)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예산 용도 및 산출내역(가능 시) 등 기재

8) 사업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 수혜범위(시민·지역 등) 기재

9) 기타 : 사업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특이)사항 기재

붙 임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 **협의회명 :**

○ **사 업 명 :**

○ **사전평가지표 : 수혜대상**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입니까? (Y / N)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시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공공성	소수의 시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사회적 포용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성평등	성별 기회의 균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적당한 규모이다.	아니다						그렇다	

2020. . .

위원 성명 **서명**

붙 임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민관예산협의회	간사 부서	소관 실 · 본부 · 국
여성·교육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경제·일자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실,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재무국
복지 · 행정	복지정책과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행정국, 시민건강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교 통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실, 교통방송
문화체육관광	문화정책과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환 경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안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실,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택 · 재생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공 원	공원녹지정책과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협 치	서울협치담당관	협치가 필요한 부서

※ 민관예산협의회 분야에 미편성된 부서는 신청건 접수시 유사 분야에 편성하여 운영되며, 신청건 접수상황에 따라 민관예산협의회 분야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심의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통합 추진

202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광역협치형)

소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45

Ⅱ. '20년 선정 운영계획 46

Ⅲ. 세부 추진내용 47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53

Ⅴ. 붙임 54

1 '시민참여예산 - 광역협치형' 신청서 54

2 '광역 협치형' 심사 기준(안) 58

20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계획

시민숙의예산으로 전환에 따라 시정협치형 사업을 광역협치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론과 숙의가 강화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복잡한 도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사업실행, 평가·환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복잡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민·관의 폭 넓은 협력을 통해 해결력을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 확보

〈 '광역협치형' 참여예산사업 정의 〉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市 사업부서(행정)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 **사업 실행 전(全)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

Ⅱ '20년 선정 운영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00억 원 이내(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 성 사업 3억 원 이내)

○ 제안대상 (택1)

협치정책사업	협치일반사업
①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③서울시 2개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④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유관 정책을 설계·제안하 것을 목표로 하는 협치형 정책 사업	①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③서울시 2개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형 사업

○ 실행기간 : 2021. 1. 1. ~ 12. 31.

☐ 선정계획

○ 단계별 진행절차

사업 신청 (1.17 ~ 2.28)	사업부서 검토 (3.2 ~ 4.18)	서류심사 (4월 중)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법적타당성, 기추진 여부, 실현가능성 등 검토	적격사업 타당성 검토 (150%내외)
전문가 컨설팅 (5월 중)	**면접심사 (5월 중)**	**숙의Ⅰ - 전체숙의/온라인숙의 (6월 중)**
전문가와 제안자 1:1 컨설팅 (내용설계, 계획서 작성 관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 심층인터뷰(130%내외)	협치가치 공유, 민관 소통 (제안자+사업부서+일반시민)
숙의Ⅱ - 심층숙의 (6월 중)	**최종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회의 (7월 중)**	**시민 투표 (8.3.~8.29)**
민관 공동 사업 구체화,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컨설팅 (사업제안자+사업부서+전문가)	자문단 중심의 전문가 컨설팅 (내용, 계획/예산안 작성 관련) 민관예산협의회 서면심사(100억원 내외)	일반 시민 70% 참여예산위원 20% 예산학교회원 5% 사업제안자 5%

Ⅲ 세부 추진내용

1. 사업신청 접수(1. 17. ~ 2. 28.)

○ **신청자격 : 서울시민**(3인 이상 공동제안), **서울 소재 단체**

※ 개인인 경우,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사업 공동제안자 필요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우편, 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처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서울협치담당관

○ **신청내용**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기타 필요한 자료 등 ※신청서 : 붙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고 : '20. 1. 17.**

·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광역협치형 사업 포함한 **전체 시민참여예산 일괄 공고**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설명회 개최 : '20. 2. 6.**

·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단체 대상 시청 설명회 개최

· 주요 협치 분야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2. 사업부서 검토(3. 2. ~ 4. 18.)

○ **검토방법 : 소관부서별로 제안서를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

-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로 판단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
- 제안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따라 필요 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재로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충분한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

▶ 【 부적격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조의 2 등」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市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 예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등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시(구)립 시설로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 예 : 공공청사(시·구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1년 이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단, 다음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적격)

※ 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출자·출연금 시의회 사전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3. 제안서 서류심사 (4월 중)

○ **심사대상 : 소관부서 검토 결과가 반영된 모든 제안사업**

○ **심사방법**

- 사업 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민관 숙의를 통해 보완 발전될 가능성 있는 사업을 평가표에 의거하여 선별 (적격성 검토)

○ **선정방법**

- 심사위원 간 심사기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심사평가표에 의거한 평과결과에 따라 150%내외로 정함.

○ **심사위원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30명)**

- 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협치지원관 및 사업부서 팀장 3명, 민간전문가 7명
- 민관예산협의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4. 전문가 컨설팅 (5월 중)

○ **목적 : 행정참여 경험이 부족한 시민의 역량강화 및 민관협치 준비**

○ **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 전체**

○ **방법 : 전문가와 제안자 간 대면방식 1대1 맞춤형 컨설팅**

- 제안서 작성 및 협치경험이 풍부한 시정분야별 현장전문가와 제안자 매칭지원

○ **내용 : 사업내용 구체화 및 완성도 있는 계획서 작성 지원**

- 사업내용 구상 : 목표-내용 간 일관성 검토, 사업내용 구체화 지원, 실효 가능성 논의, 민·관협치형 사업으로의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 작성 : 항목별 작성 방법 안내, 사업계획서 첨삭 및 작성 방향 제시

5. 면접심사 (5월 중)

○ **심사대상 : 서류심사 결과 '적격'으로 분류된 제안사업**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제안자 사업설명 그리고 심사위원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사업 타당성 심사
- 위원별 심사결과 합산 및 전체 논의를 통해 130억 원 범위 내 사업 선정
  ※ 130억 원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무관하게 선정

○ **선정방법**

- 평가점수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은 90%를 통과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예산규모가 130억 원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130억 원으로 정함

> ▸ **점수 계산방식**
> ·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 산술평균 방식(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점수 계산
>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

-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전체논의를 통해 최종 통과, 탈락 사업 결정

○ **심사위원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30명)**

- 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협치지원관 및 사업부서 팀장 3명, 민간전문가 7명
- 민관예산협의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6. 민관 숙의조정 (6월 중)

○ **추진목적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내용을 민관이 함께 수정 보완하여 사업 효과성 증진과 민관 당사자 간 협치 가치 공유 및 협치 역량 강화**

○ **참석대상 : 면접심사 통과 사업의 제안자 및 소관부서 담당 팀장**

○ **주요내용 : 협치 이해 및 전문가 조언, 제안사업 구체화 워크숍 등**

○ **진행방식 : 전체숙의 및 심층숙의 등 숙의의 수준 및 유형 다양화**

	전체숙의	심층숙의
내 용	- 광역협치형 참여예산 이해 (협치사례 소개 및 협치 이해) - 사업 제안내용 공유 - 사업별 심층숙의 계획 수립	- 사업예산 조정 및 예산과목 결정 - 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
방 법	집합교육, 집단토론, 개별논의	일정 기한 내, 사업별 심층논의
참여자	사업 당사자 전체	각 사업별 제안자, 부서담당자, 현장전문가, 협치지원관
결과물	숙의기반 1차 사업계획서 심층 숙의 계획 및 요청사항	숙의를 통한 최종 사업계획서, 심층 숙의방안 이행점검표, 민관 숙의 결과보고서 등

※ 기타 숙의과정

· 소그룹숙의 : 전체 숙의과정에서 제안 취지가 유사하거나 제안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의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 의제군별 별도 숙의과정 설계

· 온라인숙의 : 사업별 혹은 의제별 민주주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의 숙의 참여 독려

▸숙의과정 주요 조정사항

· 사업계획 단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관 협력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내용 구체화
· 사업예산 조정(사업 당 5억 원 한도 내 증감 조정)
·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 중복된 사업은 제외하거나 사업내용 변경 논의
· 사전 심의절차 필요여부(정보화타당성 검토) 등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7.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7월 중)

○ 제출서류 : 민관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서와 사업부서가 협의 조정을 통해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
○ 제안주체 : 민 · 관 공동
○ 제안방법 : 민관의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최종 사업 제안서(민관 서명 날인)의 스캔본을 시민참여예산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개별 입력

8. 심사회의 (7월 중)

○ 논의대상 : 2단계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 · 조정된 사업
- 숙의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한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
○ 회의취지 : 숙의과정을 거쳐 제출된 최종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운영방안 : 협치분과위원(민간위원+공무원위원),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시민투표 대상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운영(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운영기간 : 2020. 7. 13. ~ 7. 24.
· 대　　상 : 광역제안형(시민참여예산과 운영) 및 광역협치형 사업
· 운영방법
- 홈페이지에 시민투표 대상 사업을 공고하여 시민이 법률위반, 부적정한 사업 등을 발견할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제기 사업에 대해 적정 여부 검토 실시

9.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 (8. 29.)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한마당 총회 개최)**

○ **선정방법 : 시민투표 후 총회에서 확정**

- 시민투표 시 2차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한마당 총회(2020.8.29.)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1년도 예산안 제출

○ **투표기간 : 2020. 8. 3. ~ 8. 29.**

○ **투표대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구 분	총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20%	5%	5%	7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시민투표 관련 사항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의 계획에 따름

▸ **예산한도 결정방법**

·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11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

·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예산실링 110억 원 미만일 경우, 광역협치형 최종 선정액은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액의 95%로 정함

※ 시민투표 대상사업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으로 정함

▸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

·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 예산 한도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상관없이 선정함.

·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사업에 포함.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시민참여예산 선정계획 공고 : ’20. 1. 17.

○ 사업접수, 광역협치형 홍보(사업설명회 등) : ’20. 1. 17. ~ 2. 28.

○ 사업부서 검토(각 사업담당부서) : ’20. 3. 2. ~ 4. 18.

○ 서류심사(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 ’20. 4월

○ 전문가 컨설팅 : ’20. 5월

○ 면접심사(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 ’20. 5월

○ 숙 의(1단계 전체숙의 → 2단계 심층숙의) : ’20. 6월

○ 심사회의(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 ’20. 7월

○ 한마당 총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8. 29.

붙 임 : 1. ‘시민참여예산 - 광역협치형’ 신청서 1부
2. ‘광역협치형’ 심사 기준(안) 1부. 끝.

Ⅴ 붙 임

<붙임1>

‘시민참여예산 - 광역협치형’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 시 유의사항 ≫

※ 광역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전체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 제안자는 **’20년~’21년** 두 해 동안 제안 사업의 조정·보완 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하오니, 제안 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여부
1.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제안자는 **’20년 5월~7월 기간 동안 진행되는 민관 숙의과정(전체숙의 - 심층숙의)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민관 숙의란,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시민 제안자와 행정 담당자가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이자 과정입니다.	□
2. 최종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21년 1월 ~ ’22년 12월 기간 동안 서울시 사업부서와 함께하는 사업 실행과정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예) 민관협의체 회의(정례화, 필요시 수시 운영) 및 성과공유회, 워크숍 참석 등 ※ 민관협의체란, 민관 책임자와 사업실행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실행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의사결정기구입니다.	□

제안자(단체인 경우) 소개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e - 메일		
홈 페 이 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우편번호 000 - 000) 도로명 주소 기재				
기관 소개	미션 및 주요사업	* 기관의 미션 혹은 비전, 주요 현황 및 고유목적사업, 기타 추진 중인 사업 등 간단히 작성			
네트워크 소개	참여단체 현황	· 총 개소 · 참여단체명 : 네트워크 혹은 컨소시엄 참여/소속 기관/단체 명을 기입 * 본 제안에 뜻을 모아 함께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기입			
담 당 자	성 명		소 속		직 책	
	전 화		휴 대 폰		e - 메 일	

제안자(개인인 경우) 소개서

대표제안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			e - 메일			
제안그룹소개	* 모임 혹은 함께 제안하게 된 계기나 취지가 있는 경우 작성(필수항목 아님)					
공동 제안자 (최소2인 이상)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 - 메 일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 - 메 일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 - 메 일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 - 메 일	

협치정책사업 제안서

<table>
<tr><td>해 당 분 야</td><td colspan="3">① 협치일반사업 ___ ② 협치정책사업 __ * 해당번호에 √
(제안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토론, 공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td></tr>
<tr><td>제 안 사 업
(정 책) 명</td><td colspan="3"></td></tr>
<tr><td>소 요 사 업 비</td><td colspan="3">원(원단위 숫자로 작성 ex. 100,000,000원)</td></tr>
<tr><td>사 업 기 간</td><td colspan="3">2021. . . ~ 2021. . .</td></tr>
<tr><td>제 안 취 지</td><td colspan="3">* 본 제안과 관련된 현황 또는 주요 이슈 작성
- 현안, 현황, 문제점, 관련 사례 등 제안의 구체적인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td></tr>
<tr><td>제 안 목 적</td><td colspan="3">* 본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혹은 상태를 작성
ex) - 저소득 야간 방임 아동의 안전 증대 및 정상적인 성장 지원</td></tr>
<tr><td rowspan="4">사 업 내 용
(추 진 과 정)</td><td>단위사업명</td><td>주요추진사항</td><td>예산(안)</td></tr>
<tr><td>제안사업 내 구상하는 프로그램명
ex) 사전교육</td><td>* 단위사업/프로그램 추진 목적 및 운영계획(안) 제시</td><td></td></tr>
<tr><td>ex) 조사연구</td><td></td><td></td></tr>
<tr><td>ex) 홍보확산</td><td></td><td></td></tr>
<tr><td rowspan="2">정책제안과정
* 정책제안 유형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td><td>정 책 제 안 내 용</td><td>* 정책제안 분야 혹은 주제 등 공론을 통해 논의/제안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td><td rowspan="2"></td></tr>
<tr><td>토론/공론 운 영 계 획</td><td>* 간단회(공론준비 소규모 토의)/토론회/공론장 등 제안 내용 작성
- 토론/공론 운영개요(규모, 횟수 등), 예상 참여자 등</td></tr>
<tr><td>사 업 효 과</td><td colspan="3"></td></tr>
<tr><td>협 치
기 대 효 과</td><td colspan="3">* 본 사업을 협치형 사업(민+관 공동 계획 및 추진)으로 제안한 이유 및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제안, 계획수립, 실행과정)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td></tr>
<tr><td>기 타</td><td colspan="3">첨부파일은 e-메일로 제출 (hjh2808@seoul.go.kr)</td></tr>
</table>

협치일반사업 제안서

<table>
<tr><td>해 당 분 야</td><td colspan="3">① 협치일반사업 ___ ② 협치정책사업 __ * 해당번호에 √
(제안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토론, 공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td></tr>
<tr><td>제 안 사 업
(정 책) 명</td><td colspan="3"></td></tr>
<tr><td>소 요 사 업 비</td><td colspan="3">원(원단위 숫자로 작성 ex. 100,000,000원)</td></tr>
<tr><td>사 업 기 간</td><td colspan="3">2021. . . ~ 2021. . .</td></tr>
<tr><td>제 안 취 지</td><td colspan="3">* 본 제안과 관련된 현황 또는 주요 이슈 작성
- 현안, 현황, 문제점, 관련 사례 등 제안의 구체적인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td></tr>
<tr><td>제 안 목 적</td><td colspan="3">* 본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혹은 상태를 작성
ex) - 저소득 야간 방임 아동의 안전 증대 및 정상적인 성장 지원</td></tr>
<tr><td rowspan="4">사 업 내 용
(추 진 과 정)</td><td>단위사업명</td><td>주요추진사항</td><td>예산(안)</td></tr>
<tr><td>제안사업 내 구상하는 프로그램명
ex) 사전교육</td><td>* 단위사업/프로그램 추진 목적 및 운영계획(안) 제시</td><td></td></tr>
<tr><td>ex) 조사연구</td><td></td><td></td></tr>
<tr><td>ex) 홍보확산</td><td></td><td></td></tr>
<tr><td>사 업 효 과</td><td colspan="3"></td></tr>
<tr><td>협 치
기 대 효 과</td><td colspan="3">* 본 사업을 협치형 사업(민+관 공동 계획 및 추진)으로 제안한 이유 및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제안, 계획수립, 실행과정)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td></tr>
<tr><td>기 타</td><td colspan="3">첨부파일은 e-메일로 제출 (hjh2808@seoul.go.kr)</td></tr>
</table>

<붙임2>

‘광역협치형’ 심사 기준(안)

○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혜 대상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 전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절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숙의 과정	이 사업을 숙성시키기 위한 민관의 숙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민관 협력	숙의과정에서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협치성	민·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서명

202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구단위계획형)

소 목 차

Ⅰ. 근거 및 배경 61

Ⅱ.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개요 62

Ⅲ.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계획 62

Ⅳ. 세부 추진계획 64

Ⅴ. 주요 추진일정 72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21년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 숙의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추진 배경

○ 공론·숙의가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를 통해 운영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는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결정권과 자치력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 결정권 강화

– 사회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확대 필요

Ⅱ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개요

□ 개 념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협치적 논의(공론·숙의)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3년 전략계획 + 1년차 실행계획(2021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

Ⅲ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계획

□ 추진 목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제도 등)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

○ 자치구별로 축적한 민관 협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복잡·다양한 주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급력을 도모

□ 추진 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추진

-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 단위 유형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으로 일괄 통합하여 추진

※ '20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19개구(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 종로, 성북, 노원, 강서, 동작, 강동, 강북, 광진, 구로, 마포, 중랑)에 예산 지원

○ **시민숙의예산제도로의 전환에 맞추어 공론·숙의 과정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가치·목적 실현, 내실 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
- 건강한 공론·숙의 과정을 통해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공익성과 문제해결력이 담보된 구정 의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 도입**

- 시민과 행정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실증 필요
- 현재의 생활형 단위사업 중심의 의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사업을 도입

□ 사업 규모

○ **연차별 지원 : 10억원 내외(대상 區별)**

○ **약 255억 규모(2021년 예산 편성 기준)**

– 24개 자치구 × 10억 = 240억

※자치구별 참여예산제도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9.5-10.5억)

– 전략사업(3~5개 이내 자치구) = 15억

※전략사업은 '20년 2월 중 선정기준, 주요내용 등을 별도 공지 예정

□ 추진 절차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 절차 및 내용
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안내(1월~2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 설명회 개최
② 사업접수(3.10~4.20) - 자치구 협치회의(협치추진 민관TFT 포함)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③ 자치구 컨설팅(3월~7월) - 지역주민들의 숙의 · 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구별 컨설팅 지원
④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7.10) -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로 제출
⑤ 협의·조정(7.10~8.14) - 수정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자치구 협치회의 간 협의·조정
⑥ 최종 선정(8.21) - 협의·조정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의 예산 편성 확인 및 최종사업 선정
⑦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승인(8.29)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1월 ~2월	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안내	•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설명회 개최 •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사업추진 논의 및 융합 구조 설계	• 서울시:서울협치담당관 •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민·관 TFT
3.10 ~4.20	2 사업 접수	• 자치구 협치회의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융합논의가 완료된 서울시 전체 자치구	• 신청자: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민·관 TFT • 접수처: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3.10 ~6.30	3 컨설팅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 컨설팅 -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계획서 작성 후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교육, 토론 등 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시행	•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위원 • 서울시: 컨설팅단
7.10	4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 자치구 협치회의 • 접수처: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7.10~ 8.14	5 협의·조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상호토론방식의 협의·조정 진행	•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위원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21	6 최종 선정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최종안 확인 - 자치구 예산편성 확인 및 공통사항 조정 - 협의조정 후 보완의견이 포함된 최종안 확정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29	7 시 참여예산 위원회 승인	•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12월 중	8 협약	• 서울특별시의회 승인 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협약 체결	• 자치구:자치구 협치회의 • 서울시:서울시장

▢ 신청 필수 요건

○ 대상 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와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에 합의한 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수립('20년 7월 10일까지)

–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컨설팅 지원단(가칭)의 단계별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사업의 구체화와 실행계획 보완 조치

– 7월 10일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승인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제출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

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안내(1월~2월)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융합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 함

○ 관련주체: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 추진내용

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여부 논의

– 서울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1~2월 예정)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융합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융합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각 운영주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2. 사업접수(3.10~4.20)

▶ 사업 추진 결정 후,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 신청자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 접수처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 **추진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공문 신청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신청 시 각 자치구의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의 협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3. 컨설팅 (3.10~6.30)

▶ 각 자치구에서『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수립하되, 최종 계획 완료 시점은 7월 10일까지로 함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초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우선 검토하고, 각 자치구와 협의·조정된 의견이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나 늦어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최종 승인 단계까지는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성립을 권장함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설치 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예산 교부

○ 추진내용

– 각 자치구에서『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수립하되, '○○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제출시점과 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획 제출 시점: 2020년 7월 10일
-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아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같음

– 서울시는 (가칭)자치구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단계별 교육, 컨설팅 과정 운영

○ 추진 방법

– 컨설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조정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가 제출『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초안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검토의견서를 해당 자치구로 송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주요 검토 사항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구성원 중 여성 비율 40%이상, 민간 비율 70%이상 충족 여부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검토 사항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자치구 협치회의(가칭)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은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협치 제도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과 ② 2021년 실행계획(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의제 선정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2021년 실행계획은 2021년도에 집행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실행계획의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 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실행계획 수립시 부문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서울시 지원금의 70% 이내로 설계해야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예산 조례상의 부적격 대상 사업은 제외하여야 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개인 제안 사업 중 자치구로 배정되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계획에 반영·융합을 위한 검토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4.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제출(7.10)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조정안을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최종 승인 후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제출

○ **관련주체**

– 제출자: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 접수처: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 **추진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승인시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시민숙의예산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5. 협의·조정(7.10~8.14)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의 협의·조정 진행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관련주체**

–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대하여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자치구는 협의·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협의·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20년 8월 21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최종본을 제출

○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자치구 관계자(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수정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대해 협의·조정 검토 회의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회의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협의·조정 회의' 이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를 제출

○ **협의·조정 검토 사항**

– '협의·조정회의'의 검토사항 보완 조치 확인

6. 최종 선정(8.21)

○ **관련주체: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 **추진내용**

–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에서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최종 계획서 확인 후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및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협의·조정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 확정

7.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승인(8.29)

○ **관련주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간 협의·조정을 완료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총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승인

8. 협약(12월 중)

○ **관련주체**

– 자치구: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 서울시: 서울시장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금액 확정 및 협약 체결

□ 서울시 수행사항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설명회·토론회 개최**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자치구내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

○ **컨설팅 및 집합교육**

– 대　　상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자치구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 ① 컨설팅단 구성,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내용(지역조사 활용, 숙의공론장 설계 및 운영,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에 대한 컨설팅, ③ 자치구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

– 대　　상 : 전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실행 자치구(11개)

– 주요내용 : (가칭)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

– 대　　상 : 당해연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실행 자치구(19개)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 자치구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등 과정관리를 위한 조사와 기록을 수행

○ **성과공유회 개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운영 상의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자치구 간 공유

Ⅴ 주요 추진일정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설명회(예정) ····· ‘20. 2.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신청 ····· ~ ‘20. 3.27(금)

○ 자치구 지원 컨설팅 운영 ····· ‘20. 3. ~ 6.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 ····· ‘20. 7.10(금)

○ 협의·조정 회의 ····· ‘20. 7.13 ~ 8.14(금)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최종안 선정 ····· ~ ‘20. 8.21(금)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승인(예정) ····· ‘20. 8.29(토)

○ 협약 체결 ····· ‘20. 12월중

202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동단위계획형)

소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75

Ⅱ. 2019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76

Ⅲ. 현황 및 개선사항 77

Ⅳ. 추진개요 78

Ⅴ. 세부 추진계획 79

Ⅵ. 주요 추진일정 89

Ⅶ. 붙임 90

1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90

2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계획 91

3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92

4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3

5 동회의 실행계획서 94

2020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1년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동(洞)단위 계획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 배경

○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결정권 강화
- 참여예산제도와 융합을 통해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 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집단 숙의형 참여로 전환, 참여의 안정성 확보

Ⅱ 2019년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 추진 실적

○ **2019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 361건 2,388백만원**

- 25개 자치구 81개 동, 선정 의제 실행('19.1. ~ 12.)

○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542건 3,509백만원**

- 동 지역회의 운영, 주민총회에서 계획 결정('19.3. ~ 7.)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심의 및 시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승인('19.8.31.)
- 25개 자치구 145개 동, 542건 실행 예정 ('20.1. ~ 12.)

□ 주요 운영성과

① 서울시 참여예산의 시민 참여 저변 확대

○ **참여 동 수의 획기적 증가 : 81개 동('18) → 145개 동('19)**

○ **주민자치 사업 미경험 동(자율형 동)의 참여 확대 : 5개 동('18) → 36개 동('19)**

-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준비하며 동단위에서부터의 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율형 동 참여 촉진

※ 자율형 동 개수 제한(자치구별 1개 동) 폐지

② 주민자치 사업 미경험 동(자율형 동)에 대한 지역회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질 향상

○ **마을생태계 사업과 연계하여 자율형 동 지역회의 의제 발굴 지원**

- 지원 신청 자율형 동 대상 촉진자 파견 및 회의 운영 제반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 활동 지원체계 확립

※ '20년도 자율형 동 대상 마을생태계 사업과 연계한 지원체계 확립 의무화 예정

○ **의제 발굴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파견 촉진자 및 서울시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동 지역회의 진행의 민주성, 주민 참여도 등 의제 발굴 과정 전반 점검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19.6.26.)

Ⅲ 현황 및 개선사항

□ 사업운영 현황

○ 운영절차 : 운영 동 선정 → 동회의 운영 → 최종 사업선정 및 실행

- 운영 동 총회를 통해 의제 제출 여부 결정, 제출된 해당 의제 대상으로 사업 심의·선정 진행

○ 지 원 액 : 동별 30백만원 이내

□ 절차 및 제도상 한계

○ 운영 동 신청 단계에서 동회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행정 주도 참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 발생

○ 기존 예산액 내에서는 주민의 욕구 및 동별 역량 반영이 어려워 사업 실효성 저하

○ 주민·마을총회의 주민 결정 사항이 의제 선정에 그쳐 총회의 숙의공론장 역할 수행 부족

□ 개선사항

① 주민 참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 운영 동 서면신청(1단계)→발굴의제 제출(2단계) ⇒ (개선) 계획형 사업 신청 절차 통합

- 계획형 동의 경우, 2단계로 이루어졌던 사업 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주도의 참여 신청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업 진행 유도

※ 단, 현황파악을 위해 참여 여부를 자체 결정 후 자치구 및 시에 통보

② 동별 예산액 조정으로 의제발굴의 한계 극복 및 동별 역량 반영

(기존) 동별 30백만원 이내 지원 ⇒ (개선) 동별 최소 10백만원~최대 50백만원 범위 내 지원

- 동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동별 역량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의제 발굴 지원

③ 주민 결정 사항을 확대하여 주민·마을총회의 숙의성 강화

(기존) 발굴의제의 제출 여부 결정 ⇒ (확대) 발굴의제 제출 여부 및 발굴의제 우선순위 결정

-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정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市 사업심의 진행

- 총회를 통해 단순히 실행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문제 공론·숙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Ⅳ 추진개요

☐ 과 제 명 : '21년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편성

○ 개념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동(洞)단위의 공적인 민관 협력계획 수립

☐ 추진목표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민관협력 문화 형성

○ 시민의 예산편성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

☐ 추진기간 : 2020 ~ 2021년

○ 2020년 : 운영 동 신청, 선정의제 제출, 의제 승인, 계획수립

○ 2021년 : 사업실행

☐ 참여대상 :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운영 동

계획형	- 주민자치회 추진동 - 찾·동 마을계획 추진동 - 기타, 구 자체 마을계획 추진동
자율형	-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미추진 동

☐ 사업내용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의 발굴·실행 지원

☐ 운영절차 : 운영동 신청 → 동회의 운영 → 동 사업선정 및 실행

○ 운영동 신청 : 참여신청서 제출(자율형), 운영동 현황파악, 자치구별 예산액 안내 등

○ 동회의 운영 : 운영체계 구상,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계획수립, 주민·마을총회 개최 등

○ 동 사업선정 및 실행 : 사업승인,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운영예산 : 6,000백만원 이내

※ 동별 최소 1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 지원. 단, 30백만원 초과 사업액은 조정될 수 있음

Ⅴ 세부 추진계획

1. 핵심 운영 사항

□ 운영원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이하 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실행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

○ 사업 완료 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구성
-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으로 구성 등은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마을계획단 : 찾동 업무매뉴얼 마을계획 운영기준에 따름
- 자율형 동회의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 역 할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문제 해결

□ 참여유형

○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발굴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동(계획형 - 주민자치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및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계획형 - 마을계획)

○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자율형)

☐ 운영절차

운 영 절 차			일정	세 부 내 용
	계획형 동	자율형 동		
운영동 결정 (2월)		운영동 신청	1.31까지	자율형 동 참여신청서 제출 ※ 동(민관) →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제출	2.3까지	접수된 자율형 동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 계획형 동의 경우 주민총회를 거친 의제 제출(8월초)로 신청을 갈음함	
	운영 여부 통보	운영동 결정	2월중	(계획형) 운영여부 통보(동→자치구 총괄부서→시), (자율형) 운영동 결정(시→자치구 총괄부서→동)
동회의 운영 (2-8월)	운영 체계구상		2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자원조사/의제발굴		3-4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 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발굴의제 실행체계 확립		4-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주민·마을총회		7월중	주민·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선정의제 제출		8.3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말) → 자치구 → 시
사업 선정 및 실행 (8월-)	사업 심의, 승인		8월중	사업 심의(8월, 지역공동체담당관)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8.29,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선정사업 실행		수립:'20.10월초까지 실행:'21.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성과공유 및 평가		동회의:'21.5월까지 사업 집행:'22.6월까지	동회의 운영 과정 및 사업집행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

2.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1. 운영동 결정 (2월)

1) 운영 동 참여 신청(자율형 동)

○ 관련주체 및 신청방법

구 분		관 련 주 체	역할 및 신청방법
계획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음 》 주민총회를 거친 의제를 제출(8월초)함으로써 신청을 갈음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회의	《 신청서 제출 》 동(행정+동 지역회의) → 구(마을·자치부서) → 시(2.3 도착)
동주민센터			(계획형 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사업 참여 여부 결정 (자율형 동)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형 동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자치구 마을·자치 담당부서 (이하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접수

○ 추진 내용

- 계획형 동 : 동 단위(동 행정+동 지역회의)에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여부 자체 결정
- 자율형 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2.3까지 제출〔붙임 서식〕

2) 2020년 운영 동 참여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주민센터	(계획형) 동회의와 협의 후 운영여부 결정 및 자치구에 통보 (자율형) 각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동회의 운영 관련 사항 협의
자치구 총괄부서	자율형 신청서 제출(구→시, 2.3까지)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동 현황 파악 및 자치구별 예산액 안내(2.14)

○ 추진 내용

- 자율형 동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를 수합하여 자치구에서 시로 제출
  - ▸계획형 동(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추진동)은 별도의 참여 신청절차 없이 동회의 운영 및 자치구 행정·시에 운영 통보
  - ▸자율형의 경우 자치구별 3개 이내로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결정하여 선정
- 운영동(계획형 동 및 신청 자율형 동)수를 고려한 자치구별 예산액 안내

2. 동회의 운영 (2월 ~ 7월)

- ▸ 선정 전에 진행되어온 과정도 동회의 운영 실적에 포함
- ▸ 지속적으로 동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 제고
- ▸ 실행계획 의제에 대한 공유, 숙의, 결정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참여(개방성)할 수 있도록 운영

※ 지방재정법에 따른 활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시기와 관계없이 활동 가능

1) 동회의 운영체계 구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회의방법 및 역할 논의
마을계획단	마을계획단 운영규칙 마련
자율형 동회의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여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
  - ‣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 대표 또는 분과장 회의를 구성할 지 여부 등 논의
  - ‣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운영규약 마련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 및 자료 제공,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 자료로 재정리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
- **의제 발굴 : 동회의**
  -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 구분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발굴의제 공유·검토 및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업무절차**

시민제안	⇒	동회의 의제발굴	⇒	의제공유	⇒	논의 · 검토
※ 시민+동회의 시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인터뷰, 서면, 인터넷 등으로 제안 발굴		※ 동회의 수집된 시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의제로 발굴		※ 관련기관 발굴된 의제를 관련 기관에 공유 -현황설명, 간담회, 서면검토 등 논의 방식 사전 안내		※동회의+관련기관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 마련 -의제를 실행 가능하도록 논의(숙의과정) 등을 통해 발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공유 및 논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자치구 유관부서 의제 공유 및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의제검토 모니터링 등

○ 추진내용

가. 의제공유

- 수집된 주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마련된 의제를 동주민센터로 전달
- 동주민센터에서는 의제에 대한 유관기관을 정하고 유관기관에 의제와 민관협력방식 제안(현장설명, 간담회, 서면답변, 정보제공, 토론회, 워크숍 등)

나. 논의(숙의과정) · 검토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 ‣ 민관이 상호 만남을 통해 논의하고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
  - ‣ 서면으로 검토의견 교환 시 의제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단계별로 의견수렴 과정 진행

4) 실행계획 수립(주민·마을총회 이전에 완료)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서 작성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
  - ‣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주민·마을총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작성
  - ‣ 실행계획서는 주민·마을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지원액 범위(최소 1천만원~최대 5천만원)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시·구 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시·구 일반사업 추진 건의,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 **부적합 사업** 〉

※ 실행의제 제출 시 제외될 수 있는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특정제품 판매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명백한 자치구 소관사업
  - 구·동 행정 홍보사업 (예) 홍보 게시판 설치 등
  - 구 소관사무로 설치된 시설의 단순 개·보수 사업 (예) 가로등 정비, 횡단보도 보수 등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사업연도 이후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취득 사업
  (예) 음수대 설치,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등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

5) 주민·마을총회 개최(실행의제 우선순위 등 결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 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함께 동회의에서 선정한 실행의제를 공유,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마을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조례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자율형)**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마을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마을총회 운영

- 주민들이 실행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취합한 자료집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공람 및 의견 수렴

- 주민·마을총회에서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및 의제 우선순위 결정

  ▸실행의제 수립, 결정,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동회의가 주도적으로 수행

6) 선정의제 제출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7.29까지 자치구 총괄부서로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마을 담당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지원 준비 / 선정된 실행의제 수합(실행부서 지정) 및 제출
자치구 사업부서 (의제별 실행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준비

○ **추진내용**

- 선정된 실행의제(우선순위 포함) 제출 : 동회의+동주민센터(7.29) → 자치구 총괄부서(8.3)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8월 중) → 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계획형 동의 경우, 해당 의제 제출로 운영동 신청 절차를 갈음함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사업부서에 안내

3. 동 사업 선정 및 실행(8월~)

1) 사업 심의 및 승인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및 결과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심의(8월 중), 사업승인 결과 안내
자치구 총괄부서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결과 안내
동주민센터	동회의에 결과 안내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등 실행협력 방안 준비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된 동회의 실행의제에 대하여 사업 심의(市 지역공동체담당관)
- 심의결과를 반영한 실행의제에 대하여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승인 결과를 자치구 총괄부서에 안내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동회의 등 관련부서에 결과 안내 및 관련부서와 실행 협력방안 마련

2)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20.10.5.까지)

-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 역할, 실행 방법, 실행 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 실행의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진행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동회의 전체 모임 진행

▸선정의제에 대한 사업내용을 ‘21년 예산 시의회 제출 전에 마련
▸사업추진을 다음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내용 마련

※ 실행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 시 · 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모니터링, 교육 강사 등 지원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사업부서	‣ 사업 실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행정적 지원
자치구	총괄부서	‣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 구 · 동간 소통창구 운영 ‣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동회의 협력 실행계획서 작성 ‣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 동회의와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 동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주민(동회의)		‣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구상(주민이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하는 사업은 자율운영관리 방안 마련)

3) 선정의제 실행('21.1월 ~)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주도 활동 전개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 민관 소통창구 운영 등
자치구 총괄부서	동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자치구 사업부서	동회의 +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 추진내용

- 동회의, 사업부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실행
- 사업 성격에 따라 실행 주체를 구분하여 집행

‣ 자치구 사업부서(민관협력형, 관주도형) / 동회의 (민간주도형)

※ 동회의 의제 실행시 자치구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

4) 성과공유 및 평가

○ **동별 동회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주민자치회, 동(민관)
- 운영시기 : `21.5월경
- 운영내용
  - 동회의 주관으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로 진행
  - 성과 공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Ⅵ 주요 추진일정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제출(구→시) ····· '20. 2. 3(월)**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동(자율형) 결정 ····· '20. 2. 14(금)**

○ **동회의 운영 ····· '20. 2월 ~ 7월**

- 자원조사·의제발굴 : 2 ~ 4월 중
- 실행계획 수립 : 6월 중
- 주민·마을총회 개최 : 7월 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 ~ '20. 8. 3까지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예정) ····· '20. 8. 29(토)**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20. 9월 ~ 10월**

붙임 : 1.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서식 1부. 끝.

붙 임 1

2021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table>
<tr><td>신청 자치구 / 동</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동회의
대 표</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　　-</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동 장</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　　-</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동회의
구성현황</td><td rowspan="3">총 인원
(　　명)</td><td colspan="4">남성(　　명)　여성(　　명)</td></tr>
<tr><td colspan="4">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td></tr>
<tr><td colspan="4">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td></tr>
<tr><td>동회의
유형</td><td colspan="5">■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td></tr>
<tr><td>마을자치센터
촉진·지원관련</td><td colspan="5">● 논의 일시 :
● 논의 장소 :
● 참여자 :</td></tr>
</table>

위 본인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00구청장 귀하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계획

※ 마을자치센터와 촉진·지원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마을자치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방안을 적어주	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	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제반경비 집행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집행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
기 타				

※ 주체별 기본 역할

- 동 주민센터 : 회의 장소, 구성원 연락 등 회의 전반 준비
- 마을자치센터 : 회의 진행 촉진·지원, 제반경비 집행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연번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서명	서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예산편성시 만5년)까지 시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2년 (예산편성시 만5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제공받는 자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모니터 운영단체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시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예산편성시 만5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갈음함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table>
<tr><td>동 명</td><td colspan="2">00구 00동</td><td>실행의제 우선순위</td><td></td></tr>
<tr><td>실행계획명</td><td colspan="2"></td><td>실행기간</td><td></td></tr>
<tr><td>분과</td><td colspan="2"></td><td>제안자(분과위)</td><td></td></tr>
<tr><td rowspan="2">실행 유형</td><td>민간주도형</td><td>민관협력형</td><td>관주도형</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실행 목적</td><td colspan="4">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td></tr>
<tr><td rowspan="5">사업내용</td><td colspan="4">세부 내용</td></tr>
<tr><td colspan="4">사업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등 기재</td></tr>
<tr><td colspan="3">추진계획</td><td>실행주체</td></tr>
<tr><td colspan="3">o 추진일:
o 내 용:
o 소요예산(산출내역 포함) :</td><td></td></tr>
<tr><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3"></td><td></td></tr>
<tr><td>관련 사진</td><td colspan="2">※ 실행의제 관련 사진1 (예: 장소 또는 지도)</td><td colspan="2">※ 실행의제 관련 사진2 (예: 관련 내용)</td></tr>
<tr><td>신청액</td><td colspan="4">총액 (원)
[경상보조 (원)/자본보조 (원)]</td></tr>
<tr><td>유관 주체(부서)</td><td colspan="4">0000과(區) / 0000과(市)</td></tr>
<tr><td>동 회 의</td><td colspan="4">성 명 : 연락처:</td></tr>
<tr><td>담당자(동주민센터)</td><td colspan="4">부서명: 성명: 연락처:</td></tr>
</table>

※ 해당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202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소 목 차

Ⅰ. 사업개요 97

Ⅱ. 단계별 운영계획 98

2020년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공론을 숙의과정을 통해 예산으로 반영하여 시민제안과 공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의 효능감 제고

Ⅰ. 사업개요

○ 사업정의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 편성대상 : 500명 이상 공감하여 공론이 운영된 시민제안 중 공론장에 30일간 5,000명 이상 참여하여 민관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

○ 2020년 예산한도('21년도 실행) : **광역협치형 예산규모**(100억원) **내에서 추진**

※ 타 시정제안형 사업과의 차이점

구분	광역참여형 및 협치형	「민주주의 서울」 연계
주체	**제안(제안자) 중심** - 민관 숙의 이후에도 제안자가 철회하면 제안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음	**공론 중심** - 공론 이후에 제안자가 철회하더라도 공론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가능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전문가+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2단계 과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만 시민투표(엠보팅) 실시	**의제선정단 논의** (의제기획 시민그룹, 의제선정 시민그룹) - 500명이상 공감한 시민제안은 2차례의 의제선정단(기획단, 선정단) 검토 후에 공론 여부 결정
일반시민 참여	**시민투표(엠보팅) 실시** - 득표수 하위 사업 5%~30% (예산금액 기준) 탈락	**온·오프라인 공론 실시** - 공론장에 30일 간 5,000명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찬성 필요

Ⅱ. 단계별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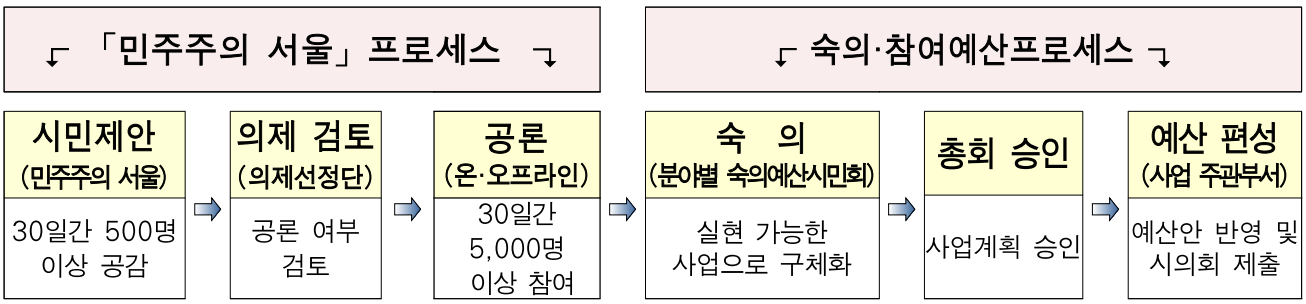

① 시민제안 [상시]

▣ **등록자격** :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

▣ **등록기간** : 상시 가능

▣ **등록방법**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democracy.seoul.go.kr)

시민제안 메뉴의 제안하기 > 에서 등록

▣ **등록내용** :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 양식으로 등록

▣ **의견제시** : 제안자 외에 타 시민은 공감 및 댓글 등록 가능

② 의제선정 [상시]

▣ **검토대상** : 30일 이내 5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시민제안

▣ **운영기간** : 500명 이상 공감 후 30~90일 이내

▣ **검토방법** : 의제기획 시민그룹 → 의제선정 시민그룹 순 검토하여 공론 여부를 결정

구 분	의제기획 시민그룹	의제선정 시민그룹
인 원	10명 내외	20명 내외
구성방법	전문가 등 위촉	여론기관 등 추천에 의해 무작위 구성
주요역할	주요 시민 제안 검토를 통한 의제 기획(검토, 기획)	기획된 의제 숙의 및 최종 의제 선정(숙의, 선정)

③ 공론 [상시]

▣ **공론대상** :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제안 중 공론화가 결정된 제안

▣ **공론방법** : 「민주주의 서울」에 온라인 공론 등록 후 30일 간

○ 시민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 필요시 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 2019 공론장 운영 사례(3회)
- 난임 관련 시민토론(찬반형) : 5,259명 참여(찬성 5,115명, 반대 139명, 기타 5명)
- 길고양이와 공존관련 시민토론(토론형) : 662명 참여(709개 의견 게재)
- 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찬반형) : 5,250명 참여(찬성 5,097명, 반대 134명, 기타 19명)

→ **민주주의 서울 연계 숙의예산 시범 편성 추진 : 동물보호과 2억 6천만원**

④ 숙의 2020. 3. ~ 8.

▣ **숙의대상** : 온라인 공론장에 5,000명 이상 참여한 제안

○ 찬반형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함

○ 토론형의 경우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의견 위주로 숙의

▣ **숙의기간** : 온라인 공론장 종료 후 2~3개월 내외

▣ **숙의방법** : 소관부서에서 각 실국별 구성된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를 활용해 숙의 실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부서융합의제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숙의예산시민회 미 구성 실국은 실국별 시민참여예산 민관예산 협의회 위원 등 활용 구성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기간 : 매년 3월~8월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기간 이후 공론은 차년도 숙의예산시민회로 이월

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2020. 8. 29.(토)

▣ **승인대상** : 총회 전까지 숙의를 완료하여 제출된 사업

▣ **승인내용** : 숙의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⑥ 예산안 반영 2020. 9. ~ 10.

▣ **편성방법** : 해당 사업을 실시할 실·본부·국의 '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며 예산 편성 일반 절차에 따름

⑦ 예산안 시의회 제출 2020. 11.

※ 공론대상(500명), 숙의대상(5,000명) 기준인원은 향후 「민주주의 서울」 운영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